

의 안 번 호	제 호
보고및의견제시일	2018. 11. .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구 미 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11월 일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기 위함.

2. 보고의 목적 및 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2.4.15)되면서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법적의무화 되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개정('17.9.19)에 따라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계획의 범위

- 위치 : 구미시 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내용 :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

4.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① 총괄

구분	결정현황		집행현황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현황 (10년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구성비 (%)
합계	4,765	63,926,682	3,371	40,841,699	1,394	23,084,983	583	19,432,776	100.0
비율(%)	100.0	100.0	70.7	63.9	29.3	36.1	41.8	84.2	(미집행 대비)
교통시설	3,717	20,478,433	2,542	14,956,829	1,175	5,521,604	503	3,814,023	19.6
공간시설	700	21,538,003	499	5,659,766	201	15,878,237	71	14,156,996	72.9
유통 및 공급시설	90	802,866	88	762,276	2	40,590	-	-	-
공공·문화체육시설	173	7,310,792	163	7,141,606	10	169,186	6	90,577	0.5
방재시설	46	11,877,652	40	10,402,286	6	1,475,366	3	1,371,180	7.1
보건위생시설	6	512,051	6	512,051	-	-	-	-	-
환경기초시설	33	1,406,885	33	1,406,885	-	-	-	-	-

②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감 현황

구분	결정현황		집행현황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현황 (10년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구성비 (%)
2017년도	4,441	63,291,563	3,118	38,964,641	1,323	24,326,921	617	20,722,827	100.0
도로	3,320	19,517,359	2,262	13,291,165	1,058	6,226,193	515	4,793,942	23.1
공원	283	16,462,524	182	1,809,817	101	14,652,707	48	13,063,782	63.0
녹지	333	3,490,014	253	2,516,855	80	973,159	28	839,992	4.1
기타	505	23,821,666	421	21,346,804	84	2,474,862	26	2,025,110	9.8
2018년도	4,765	63,926,682	3,371	40,841,699	1,394	23,084,983	583	19,432,776	100.0
도로	3,553	19,759,118	2,440	14,334,443	1,113	5,424,675	491	3,771,730	19.4
공원	293	16,527,219	188	2,121,152	105	14,406,067	43	12,810,122	65.9
녹지	368	3,463,400	281	2,509,449	87	953,951	25	830,943	4.3
기타	551	24,176,945	462	21,876,655	89	2,300,290	24	2,019,981	10.4
증·감	324	635,119	253	1,877,058	71	▽1,241,938	▽34	▽1,290,051	

※ 국가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민간개발) 집행으로 분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① 경과년수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계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583	19,432,776	166	3,314,681	261	6,888,514	156	9,229,581	
도로	491	3,771,730	140	1,619,052	225	841,417	126	1,311,261	
공원	43	12,810,122	13	1,617,052	20	5,957,966	10	5,235,104	
녹지	25	830,943	3	12,695	7	18,643	15	799,605	
기타	24	2,019,981	10	65,882	9	70,488	5	1,883,611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류

- 장기미집행시설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실효대상시설(2020.7.1 기준)로 분류함

구분	계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2단계)		실효대상시설 (2020.7.1 기준)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비(백만원)		사업비(백만원)	
합계	583	19,432,776	165	3,314,150	418	16,118,626	
		2,543,448		565,796		1,977,652	
도로	491	3,771,730	140	1,619,052	351	2,152,678	
		845,760		367,396		478,364	
공원	43	12,810,122	13	1,617,052	30	11,193,070	
		1,271,233		166,397		1,104,836	
녹지	25	830,943	3	12,695	22	818,248	
		240,211		3,987		236,224	
기타	24	2,019,981	9	65,351	15	1,954,630	
		186,244		28,016		158,228	

3) 장기미집행 폐지 추진현황

① 2017. 10. 23. : 총 3개소(도로 2개소, 전기공급설비 1개소)

※구미시 고시 제2017-196호(2017.10.23.)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315	8	국지 도로	120	중1-18 인의834	인의292-15	일반 도로	-	경북고42 (‘78.2.14)	
변경	소로	2	315	8	국지 도로	102	중1-18 인의834	소2-264 인의259-2	일반 도로	-		연장 축소
기정	소로	3	361	6	국지 도로	788	진평375-1	소2-27 진평1043-2	일반 도로	-	경북고263 (‘91.7.15)	
변경	소로	3	361	6	국지 도로	709	소1-31 진평375-1	소2-27 진평1043-2	일반 도로	-		연장 축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3	한전변전소	오로리 산19	3,600	감) 3,600	-	경북고3 (94.1.5)	

② 2018. 11. 05. : 총 1개소(체육시설 1개소)

※구미시 고시 제2018-271호(2018.11.0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7	체 육 시설	골프 연습장	구미시 오태동 산91-5번지 일원	구미시 오태동 산91-7번지 일원	26,745	감) 19,014	7,731	구미시 고시 제2006-30호 (2006.6.19.)	

③ 2019. 예정 : 총 4개소(학교 2개소, 도로 1개소, 도서관 1개소)

- 경구초/중·고등학교 : 초등학교(A=11,570㎡), 중·고등학교(A=39,670㎡)
- 경구초/중·고 진입도로 : 중로1-82호선(B=20m, L=377m)
- 고아도서관 : A=4,500㎡

5.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

-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 3년 이내 시행 : 1단계, 3년 이후 시행 : 2단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①항 및 제③항

2)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2018. 5. 16. 공고내용)

구 분	총 계		1단계 (2018~2020년)		2-1단계 (2021~2022년)		2-2단계 (2023년 이후)		비고
	개소	면 적(㎡) 사업비(백만원)	개소	면 적(㎡) 사업비(백만원)	개소	면 적(㎡) 사업비(백만원)	개소	면 적(㎡) 사업비(백만원)	
총 계	1,350	23,829,458 3,106,430	465	17,638,015 1,904,493	4	407,969 19,113	881	5,783,474 1,182,824	
도 로	1,091	5,852,059 1,677,127	389	3,174,982 596,362	3	330,346 10,847	699	2,346,731 764,075	
공 원	102	14,649,120 1,262,306	33	11,423,699 920,499	1	77,623 8,266	68	3,147,798 333,541	
녹 지	79	753,721 233,322	23	604,793 190,020	-	- -	56	148,928 43,302	
기타	78	2,574,558 239,518	20	2,434,541 197,612	-	- -	58	140,017 41,906	
주차장	53	70,253 34,564	5	7,400 7,153	-	- -	48	62,853 27,411	
자동차 정류장	2	24,114 8,869	2	24,114 8,869	-	- -	-	- -	
광장	3	515,931 18,490	3	515,931 18,490	-	- -	-	- -	
공공공지	6	2,288 969	-	- -	-	- -	6	2,288 969	
시장	1	30,842 5,991	-	- -	-	- -	1	30,842 5,991	
학교	2	31,701 6,708	-	- -	-	- -	2	31,701 6,708	
체육시설	1	12,333 827	-	- -	-	- -	1	12,333 827	
하천	7	1,819,680 149,959	7	1,819,680 149,959	-	- -	-	- -	
유수지	2	7,490 1,242	2	7,490 1,242	-	- -	-	- -	
하수도	1	59,926 11,899	1	59,926 11,899	-	- -	-	- -	

※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공고(구미시 공고 제2018-774호, 2018.05.16.)

3) 단계별 집행계획 비교 및 변경사유

구분	'18.5월 공고시	금회 변경 공고	변경사유	비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설	1,350	1,386	■ 집행 48개소(미집행→집행) ■ 폐지 46개소(미집행→폐지) ■ 부서의견 반영 15개소(미집행→집행) ■ 신설 143개소(신설→미집행) ■ 시설재검토 1개소(집행→미집행(부분)) ■ 재수립 1개소(미집행(부분))	

4)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구 분	총 계		1단계 (2018~2020년)		2-1단계 (2021~2022년)		2-2단계 (2023년 이후)		비고
	개소	면 적(㎡) 사업비(백만원)	개소	면 적(㎡) 사업비(백만원)	개소	면 적(㎡) 사업비(백만원)	개소	면 적(㎡) 사업비(백만원)	
총 계	1,386	22,734,467 3,228,955	432	16,466,756 1,974,351	4	411,361 22,662	950	5,856,350 1,231,942	
도로	1,113	5,424,675 1,429,077	366	2,655,342 572,110	3	333,738 14,073	744	2,435,595 842,894	
공원	105	14,406,067 1,426,813	30	11,193,070 1,104,836	1	77,623 8,589	74	3,135,374 313,388	
녹지	86	728,587 162,458	22	599,608 129,821	-	- -	64	128,979 32,637	
기타	82	2,175,138 210,607	14	2,018,736 167,584	-	- -	68	156,402 43,023	
주차장	60	71,119 30,885	4	7,209 6,730	-	- -	56	63,910 24,155	
자동차정 류장	2	25,810 9,224	2	25,810 9,224	-	- -	-	- -	
광장	3	515,931 30,388	3	515,931 30,388	-	- -	-	- -	
공공공지	6	2,288 863	-	- -	-	- -	6	2,288 863	
시장	1	30,842 8,656	-	- -	-	- -	1	30,842 8,656	
수도공급 설비	1	9,748 663	-	- -	-	- -	1	9,748 663	
학교	2	31,701 7,469	-	- -	-	- -	2	31,701 7,469	
체육시설	1	12,333 838	-	- -	-	- -	1	12,333 838	
하천	5	1,469,786 121,242	5	1,469,786 121,242	-	- -	-	- -	
유수지	1	5,580 379	-	- -	-	- -	1	5,580 379	

6. 첨부자료

○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세부 시설별)

구분		결정현황		집행현황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현황 (10년이상)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4,765	63,926,682	3,371	40,841,699	1,394	23,084,983	583	19,432,776	
교통 시설	계	3,553	19,759,118	2,440	14,334,443	1,113	5,424,675	491	3,771,730	
	도로	광로	4	987,113	4	987,113	-	-	-	-
		대로	95	6,743,763	76	4,572,984	19	2,170,780	14	1,950,134
		중로	686	8,150,109	497	6,270,872	189	1,879,237	75	1,128,298
		소로	2,768	3,878,133	1,863	2,503,474	905	1,374,659	402	693,299
	철도	2	261,406	2	261,406	-	-	-	-	-
	주차장	155	305,595	95	234,476	60	71,119	10	16,483	
	자동차정류장	7	152,314	5	126,504	2	25,810	2	25,810	
	자전거정류장									
공간 시설	계	700	21,538,003	499	5,659,766	201	15,878,237	71	14,156,996	
	광장	22	1,086,425	19	570,494	3	515,931	3	515,931	
	공원	293	16,527,219	188	2,121,152	105	14,406,067	43	12,810,122	
	녹지	368	3,463,400	281	2,509,449	87	953,951	25	830,943	
	유원지	1	445,725	1	445,725	-	-	-	-	-
	공공공지	16	15,234	10	12,946	6	2,288	-	-	-
유통 공급 시설	계	90	802,866	88	762,276	2	40,590	-	-	-
	시장	12	192,340	11	161,498	1	30,842	-	-	-
	수도공급설비	36	498,885	35	489,137	1	9,748	-	-	-
	전기공급설비	39	80,919	39	80,919	-	-	-	-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	-	1	-	-	-	-	-	-
	방송 · 통신시설	1	23,859	1	23,859	-	-	-	-	-
	공동구	1	6,863	1	6,863	-	-	-	-	-

구분		결정현황		집행현황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현황 (10년이상)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계	173	7,310,792	163	7,141,606	10	169,186	6	90,577	
	학교	129	3,424,562	122	3,298,954	7	125,608	4	59,332	
	운동장	1	167,179	1	167,179	-	-	-	-	
	공공청사	14	164,956	14	164,956	-	-	-	-	
	문화시설	4	264,018	4	264,018	-	-	-	-	
	체육시설	12	3,160,941	10	3,121,863	2	39,078	1	26,745	
	도서관	3	14,076	2	9,576	1	4,500	1	4,500	
	연구시설	1	45,285	1	45,285	-	-	-	-	
	사회복지시설	9	69,775	9	69,775	-	-	-	-	
방재 시설	계	46	11,877,652	40	10,402,286	6	1,475,366	3	1,371,180	
	하천	27	11,474,191	22	10,004,405	5	1,469,786	3	1,371,180	
	유수지	19	403,461	18	397,881	1	5,580	-	-	
보건 위생 시설	계	6	512,051	6	512,051	-	-	-	-	
	화장시설	1	111,854	1	111,854	-	-	-	-	
	공동묘지	2	331,859	2	331,859	-	-	-	-	
	도축장	1	29,188	1	29,188	-	-	-	-	
	종합의료시설	2	39,150	2	39,150	-	-	-	-	
환경 기초 시설	계	33	1,406,885	33	1,406,885	-	-	-	-	
	하수도	26	256,365	26	256,365	-	-	-	-	
	폐기물처리시설	6	1,090,435	6	1,090,435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1	60,085	1	60,085	-	-	-	-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9.19.>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④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